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71호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

- (개요)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진단·의욕제고(1단계) →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
- (지원대상*) 만 18~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시기에 따라 연도 중 지원대상의 소득요건 등 변동 가능
- (Ⅰ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
 -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 ↳ 그 외 특정취약계층 참여자의 범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따름
- (Ⅱ 유형) 청년(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 지원

구분	1단계 (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패키지 Ⅰ	•3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25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2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 •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지급
패키지 Ⅱ	•1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20만원	•최장 8개월 •훈련비 최대 3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5~5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시 자부담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2.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내용)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특정취약계층 및 II 유형(청년·중장년) 참여자에 대하여 위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단계별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목표인원: 총 9만명) ▲ I 유형: 특정취약계층 2만명
▲ II 유형: 청년 5만명, 중장년 2만명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시기에 따라 연도 중 위탁 목표인원이 추가배정될 수 있음
(추가배정시 별도 공지)
- (위탁기간) 2020년 2월 7일 ~ 2021년 2월 6일(1년 계약)

3. 주요 내용

① (위탁사업비) ‘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 (기본금) ▲ 청년·중장년: 40만원 ▲ 특정취약계층: 65만원

* 기본금은 1단계 IAP 수립 후 지급

- 다만, 훈련기관 겸업기관 및 대학 내 사무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기본금 하향 조정

① 직업훈련 겸업기관*: 3단계(취업알선) 중 중복되는 비중(1/3수준)을 고려하여 40만원 → 25만원으로 조정

* 취업성공패키지와 직업훈련을 겸업하는 위탁기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겸업 훈련기관의 직업훈련(2단계)에 연계하는 경우 참여자 1인당 기본금 25만원

◆ 직업훈련 겸업기관의 범위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소속 법인은 다르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 법인이 아닌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번호(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는 다르나,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② 대학내 사무소((구)대학내 분사무소): 시설비·사업운영비 절감 가능성을 고려하여 40만원 → 30만원으로 조정

◆ 대학내 사무소 범위

* 대학내(대학 인근지역 포함) 공간에 입주하여 대학으로부터 사업운영 공간, 시설 등을 무상(또는 비용 일부) 제공받는 경우

- (취업인센티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초기상담 이후 조기취업의 정도와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급

▶ 단순 본인취업은 부지급하되, 아래 ①~③의 경우로 한정하여 지급

취업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금액
① 컨설팅(구직 구직만남의 날, 이력서클리닉, 동행면접 등)을 통한 알선취업 → 컨설팅 기관과 알선취업처 동일	단가 대비 1.2배
② 알선취업 성공(컨설팅 없는 알선취업 또는 컨설팅과 알선취업처 상이) - 또는, 대면상담서비스(총 6회 이상)를 통한 취업 → (신설) 대면상담 6회 중 참여자 선호직종 일자리정보 제공 또는 내·외부 복지서비스,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횟수가 합계 3회 이상이 되어야 함	단가금액
③ 간접 고용서비스(예: 입사지원서 컨설팅, 면접코칭, 취업특강 등 총 4회* 이상)를 통한 취업 * (신설) 동일한 날짜에 동일 서비스를 여러 차례 제공한 경우, 1회만 인정	단가대비 50%

* ①: 1단계 종료(IAP수립)일 이후 사후관리기간까지 컨설팅+알선취업자 기준

②~③: 초기상담일부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서비스 제공 횟수 기준

<’20년 위탁사업비 지급액(만원)>

I 유형 특정취약계층						II유형 청년·중장년					
○취업역량평가(A,B 등급-취업역량 낮음)						○취업역량평가(A,B 등급-취업역량 낮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 미만	~215 미만	~245 미만	245 이상~			~185 미만	~215 미만	~245 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65	90	110	130	180	6월이내 취업	40	70	90	110	160
12월이내 취업		70	90	110	160	12월이내 취업		50	70	90	140
15월이내 취업		50	70	90	120	15월이내 취업		30	50	7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취업역량평가(C,D 등급-취업역량 높음)						○취업역량평가(C,D 등급-취업역량 높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 미만	~215 미만	~245 미만	245 이상~			~185 미만	~215 미만	~245 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65	70	90	110	160	6월이내 취업	40	50	70	90	140
12월이내 취업		50	70	90	140	12월이내 취업		30	50	70	120
15월이내 취업		30	50	70	120	15월이내 취업		10	30	5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를 적용, 임금연동 인센티브 5만원 상향 조정

** ‘20.1.1. 이후 취업자는 참여 연도와 무관하게 ‘20년 임금연동 인센티브 적용

② 공모대상 지역 및 선정기관 수

- '19년도 위탁기관 평가결과 및 지청별 위탁 목표인원, 위탁기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지청 단위로 선정
 - * 지방 고용노동지청별로 사업자등록번호 1개로 1개의 위탁기관 신청 가능 (2개 이상의 위탁기관 신청 희망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 고용노동지청별 '20년도 선정예정기관 수: 붙임 참고(제주 별도공고)

③ 신청자격

- (자격 요건)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20.2.7.까지 등록 예정인 경우 포함) * 대학 내 사무소의 경우에도 동 요건 충족필요
 -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제외

 - ①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용센터에서 확인)
 - i)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ii)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i) '19.12.31.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약정해지 조치를 받고 약정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ii) '19.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참여기관(사업자)으로서 민간위탁기관의 약정해지 요청에 의해 약정해지 되어 약정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 다만, '19년 사후관리기관으로써 참여자의 이관 동의 및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약정해지한 기관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20년도 위탁사업 참여 가능
 - iii) '19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에 '20년 위탁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관(사업자)

③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

[참고]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규정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시설 요건)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구비

- 일반사무소: '취업지원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공간, 단체 프로그램 운영 공간, 온라인 구인정보 탐색 관련 시설 등 구비

구 분	상담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영 공간	구직정보 탐색 공간
면 적	6.6평방미터 이상 (약 2평 이상)	16.5평방미터 이상 (약 5평 이상)	10평방미터 이상 (약 3평 이상)
구조 및 시설	· 독립된 별도 공간	· 단체프로그램 운영 위한 기본시설* 구비 * 테이블, 의자, 마이크시설 등	· 개방형 공간 가능 · 인터넷 사용 가능한 컴퓨터 3대 이상 구비
비 고	전용공간 내지 전용시설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		

- 대학내 사무소: 일반사무소 시설요건과 동일

다만, 단체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구직정보 탐색공간은 대학 내 관련 시설 활용가능(공동이용 가능)

* 「고용복지+센터」, 「조선업희망센터」 등 정부·공공기관의 건물에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는 충분한 상담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설요건 결정 가능

- 격오지: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별도 상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정기 출장상담 진행

* '격오지'는 고용복지+센터 관할 지역 내 민간위탁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고용복지+센터가 인정하는 지역을 뜻함(ex: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인적 요건) 민간위탁 사업자는 담당자 2명(일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이상을 지정·운영

* '업무담당자'는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훈련연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재(타)사업 겸직불가

- (자격 및 경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 해당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담당인원) 업무담당자 1인당 상시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운영

- (고용형태) 업무담당자는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시간제 근로 포함)로서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다만,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경우 관할센터의 승인을 받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가능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건)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 해소, 구직의욕·역량 증진을 위한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능력* 구비

* 자체 운영능력 및 외부 프로그램 연계능력 포함

○ (신규 신청기관 예외규정) 상기 신청자격 중 자격요건(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요건), 시설 및 인적요건을 약정체결일('20.2.7)까지 충족하면 사업 가능(동 기간까지 미 충족시 선정 무효)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 ① 사업수행기관(사업체) 현황
- ② 최근 3년간 취업알선 및 유관사업 추진실적
- ③ 위탁사업 추진계획서
- ④ 기관자격 및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관요건 관련: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시설요건 관련: 건물평면도 사본
- ⑤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직업훈련기관 관련 확인서류
 - * 상세내용: 관련 서식 참고

4 위탁기관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2020년 민간위탁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는 관할고용센터별로 접수

신청기간	2020. 1. 2.(목) ~ 2020. 1. 15.(수)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⑤ 제안 신청서를 담은 CD 또는 USB 1개 (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 * 지원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 (기본요건 확인) 관할 고용센터별로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

* 신청기관 현황표, 현지실사 점검표, 신청기관별 검토 의견서 작성 (서식 2~4 참고)

- (선정심사 위원회) 1개 (지)청 단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타 지역출신(주요 업무장소가 타 (지)청 관내)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이 2/3 이상 되도록 구성

* 선정심사 위원이 응모한 위탁기관과 친족관계 또는 당해 사업체의 임직원(과거 근무자 포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위원에서 배제

* 청별 심사위원 풀(pool) 구축 후 지청 단위로 심사위원회 운영

【지청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 (구성) (지)청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 1개 (지)청 단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센터 소장이 위원장(고용센터가 여러 개인 경우 (지)청 단위에서 협의하여 결정)이 되고, 동 선정심사위원회에 학계 및 지자체, 현장 전문가 등의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총 7인(위원장 포함)

- ▶ (운영)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탁기관 선정 절차) '19년 기존기관 중 '19년도 평가결과 상위 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선발하되, 평가 하위기관 및 '20년 신규기관은 PT심사를 통해 역량 검증

① '19년 기존 참여기관 중 기관평가 A·B등급을 받은 기관 →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선발

② ①'19년 기존 참여기관 중 A·B 등급 기관 중 **별도 검증이 필요한 기관***, ②C·D 등급 기관, 최소성과 미달 기관(A·B 등급 기관 중 최소성과 미달기관 포함), ③'20년 신규신청 기관

→ 서면심사, 현장실사, PT심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19년 기존 참여기관의 경우,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현장심사 생략 가능

* ('19년 기존 참여기관 중 A·B 등급 기관 중 별도 검증이 필요한 기관)

- ▶ 서면심사 결과 사업계획 부실 등 별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19년도 정부(중앙/지방) 위탁사업 운영시,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 ▶ '19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지도·점검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1조 제1항의 사용자계정 관리사항을 미준수한 경우
-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있는 경우 등

- (선정결과 통보) 위탁기관 선정결과는 문서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통보

* 선정결과 통보시, 예비 사업자(3개소 이내) 통보 가능

- (위탁약정 체결) 심사결과 순위내에 포함된 위탁 사업자의 선정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하고 요건 충족시 위탁약정 체결

- 순위내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비 사업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 충족시 약정체결
- 약정은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지방관서 분임계약관*”과 위탁기관(사업자)간에 체결

* 고용센터 소장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과장 등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

- **신설** 약정체결시 임금체불 금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등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작성<구비서류 1-4>

⑤ 위탁기관 심사기준

- (기본원칙) 서면심사, 현장실사, 사업계획 심사(PT 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 인적자원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세부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독창성, 사업수행 능력, 인적자원 투자계획 등을 기준으로 상위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2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10점)	공모한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 '19년 선정심사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을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처리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0점)	사업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 포함 여부 및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50점)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취업실적(20점)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관 취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연계실적 * '19년도 취업패 중장년층 자체모집 실적은 1.5배 가점
	상담 시설 및 기타 관련 인프라의 적절성(15점)	상담 시설 등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시설 구비 여부, 외부시설 연계 등
	신설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구인처 보유 현황(15점)	① 복지 서비스, 일경험·직업훈련 등 내·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능력(50%) *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능력, 자치단체·타 위탁기관 등 외부기관 협업체계 등 ② 지역 사업장 등 구인처 보유·관리현황(50%)
인적자원 투자계획 (30점)	임금지급수준(10점)	'20년 업무담당자 임금 (초임상담사 임금 50% + 해당기관 전체 상담사 임금평균 50%)
	교육계획(10점)	'20년 계획된 교육시간 (평균교육시간 50% + 외부교육시간 비중 50%)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계획(5점)	제출된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 계획으로 평가
	신설 업무담당자 상담경력(5점)	'20년 업무담당자의 평균 상담경력

- **신설** '19년도 사업추진계획 미이행시 감점 방법:

- ▶ 시설 구비, 참여자 모집,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4개* 계획을 평가하여, 미이행 계획 1개당 1점 감점(최대 3점)

* ①물적 현황('19년 공고문 <구비서류1-1>), ②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안, ③단계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④취업지원 및 취업률 제고방안(②~④: '19년 공고문 <구비서류1-3>)

- ▶ 계획의 80%* 이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계획 미이행으로 보되,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 이행으로 평가

* (예시) '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안'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온라인 홍보, 유관기관 연계 등 5개 세부계획을 제출한 경우, 4개 이상을 달성한 경우 계획 이행으로 평가

↳ 다만, 80% 이상 달성시에도, 심사위원회가 중요 계획이 미이행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감점 가능(예시: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했으나,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수행실적 평가:**

- ▶ 취업성공패키지 및 유관 취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정량·정성평가(신규 참여기관: 유관사업 실적만 감안)

* 유관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K-move 스쿨, 고용디딤돌,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 실적: 참여자수, 연계인원수, 취업자수, 성과평가등급 등 정량적 실적 및 기타 질적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적 실적

↳ (**신설**) '19년도 취성패 중장년층 자체모집 참여자·취업자 수는 1.5배 가점 부여

- ▶ 평가등급 및 배점: A(10%), B(25%), C(30%), D(25%), E(10%)로 강제배분 → A: 20점, B: 16점, C: 12점, D: 8점, E: 4점 부여

* 신청기관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 **실적산정 예시:** ㉠+㉡+㉢의 합계점수(100점)를 기준으로 A~E 등급 부여

↳ ㉠ (참여자수 + 연계인원수)의 합계인원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하여 기관 순위별 차등 점수 부여(1위 50점, 2위 45점, 3위 40점, 4위 35점, 5위 30점)

↳ ㉡ 취업자수(자체 운영+서비스 연계자)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하여 기관 순위별 차등 점수 부여(1위 30점, 2위 25점, 3위 20점, 4위 15점, 5위 10점)

↳ ㉢ 사업별 평가 등급 및 기타 정성평가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하여 기관 순위별 차등 점수 부여(1위 20점, 2위 17점, 3위 14점, 4위 11점, 5위 8점)

→ 실적산정시, 고용센터별로 세부 실적지표 및 배점 조정가능

- '19년도 인적자원 투자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 ▶ '19.1~12월까지 인적자원 투자계획 모두(임금, 교육, 성과 상여급 운영계획)를 평가하여 미 이행시 10점 감점

- 신설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구인처 보유현황 평가:

- ▶ 아래 배점표를 기준으로 정량·정성적 성과(또는 계획)를 평가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부지표, 배점 조정 가능
- ▶ ①내·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발굴·제공능력(7.5점):

세부지표	배점
1)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집단상담,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제외), 일경험, 창업지원, 취업특강, 면접컨설팅 등 - 자체 또는 외부위탁을 통해 개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연계인원·참여자 만족도 등 운영성과, 자체 개선노력 등	2.5
2) 외부 복지 서비스,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집단상담,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제외), 일경험, 창업지원, 취업특강, 면접컨설팅 등 - 최근 3년간 연계한 외부 복지서비스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수, 연계인원 수 (또는 비율) 등	2.5
3) 향후 내·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발굴계획 * (예시)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신설, 고용센터 및 지역내 타 위탁기관과 협력하여 자치단체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협약체결 등	2.5

- ▶ ②구인처 보유·관리현황(7.5점):

세부지표	배점
1) 구인·구직자 정보를 교환하는 구인처 수 - 워크넷 등록 구인기업, 워크넷·취업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알선한 구인기업, MOU 체결 기업, 기타 인사담당자와 상시 채용정보를 공유하는 기업 등	2.5
2) 구인처 알선실적, 임금수준 등 성과 - 최근 3년간 알선 취업자 수, 고임금 알선취업자(연도별 위탁기관 평가지표의 가점 기준임금) 비중 등	2.5
3) 향후 구인처 발굴 계획 * (예시) 지역 사업장 3개소와 MOU 체결, 워크넷 등록 구인기업 3개소 발굴 등	2.5

[참고] 인적자원 투자계획 평가지침

① 임금지급수준 관련

-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제외)을 모두 포함한 연간 보수 총액
 - 성과급: 고정적·정기적 형태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닌, 상담실적 등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형태의 급여
- 평가방식: 제출된 '20년도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에 최고점을 부여한 후, 비례하여 차등 점수 부여(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평가임금총액 = (초임상담사 임금 50%) + (전체 상담사 임금평균 50%)
 - 전체상담사 임금 평균 = $\frac{\text{업무담당자 전체의 임금총액}}{\text{업무담당자 총 인원수}}$
 - 초임상담사 임금은 경력 1년 미만인 업무담당자의 '20년 연봉책정액'
 - ↳ 경력은 과거 재직한 위탁기관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판단(취업성공패키지 상담경력에 한정)
- * 예시: ① 초임 임금: A기관 2,400만원, B기관 1,900만원 → A기관 5점, B기관 4점(=5×[1900/2400])
② 전체 임금: A기관 4,000만원, B기관 2,000만원 → A기관 5점, B기관 2.5점
③ 총점: A기관 10점, B기관 6.5점

② 교육계획 관련

- 교육계획 평가 방식: '20년 평균교육시간 및 외부교육시간*' 비중을 평가
- * 취성패 위탁기관이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나, 해당 위탁기관(동일 법인 또는 동일 사업주 포함)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유료증이 발부되는 교육으로 집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모두 가능
- 방법: ▶ **평균교육시간**은 가장 많은 교육시간을 제출한 기관에 5점을 부여한 후 비례하여 차등점수 부여(최대 80시간까지 제출가능)
 - ↳ $\text{평균교육시간} = \frac{\text{업무담당자의 총 교육시간}}{\text{업무담당자수}}$
- ▶ **외부교육시간**은 외부교육시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에 5점을 부여한 후 비례해서 차등점수 부여
 - ↳ $\text{외부교육시간 비중} = \frac{\text{총 교육시간 중 외부교육시간}}{\text{총 교육시간}} \times 100$
- ▶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여
- * 예시: ① 평균교육시간: A기관 80시간, B기관 40시간, C기관 20시간
→ A기관 5점, B기관 2.5점, C기관 1.3점
② 외부교육시간: A기관 80시간, B기관 20시간, C기관 5시간
→ 외부교육시간 비중은 A기관 100%, B기관 50%, C기관 25%이므로, 점수는 A기관 5점, B기관 2.5점, C기관 1.3점
③ 총점: A기관 10점, B기관 5점, C기관 2.6점

③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을 미제출시, 관련 부분은 0점 처리되며, 제출할 경우 5점 이내에서 점수 부여

④ (신설) 업무담당자 상담경력 관련

- 평가방식: 업무담당자 평균 상담경력이 가장 높은 기관에 최고점을 부여한 후, 비례하여 차등 점수 부여
 - 업무담당자 평균 상담경력은 업무담당자 1인당 평균 상담경력이 가장 높은 기관에 5점을 부여한 후, 비례해서 차등점수 부여(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업무담당자 평균 상담경력 = $\frac{\text{업무담당자의 총 상담경력}}{\text{업무담당자수}}$
 - * 예시: A기관 5년, B기관 3년 6개월, C기관 2년 → A기관 5점, B기관 3.5점, C기관 2점
 - 업무담당자는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훈련연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타 사업 겸직불가)'로써, 행정업무지원자는 제외
 - 경력은 과거 재직한 위탁기관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판단(재직증명서 확인,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경력에 한정)

⑥ 기타 가점 관련

- 「직업상담 슈퍼비전」,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 취업지원 사례실적에 따라 2021년 선정심사시 가점부여 예정
 - * 상담사가 이직한 경우, 사례 제출당시 재직한 위탁기관의 실적으로 인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하거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021년 선정심사시 가점부여 예정

⑦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로고, 간판 등 사용

- '20년 위탁약정 체결시, 모든 민간위탁기관은 취업성공패키지의 별칭, 로고, 간판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
 - 다만, 정부 상징(태극마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⑧ 사업자 선정 · 통보

- 현장방문 심사 및 PT심사 실시(일정은 지방관서별로 추후 통보)
- 선정결과는 기관별로 개별 문서 통지('20.2.7(금)까지)
 - * 신청서 제출기관 중 심사결과 적정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탁기관 약정 체결('20.2.7(금)까지)

⑨ 문의처

- '20년 고용노동지청별 선정예정 기관수 및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은 위탁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문의(붙임 참조)

< 붙임: '20년 고용노동지청별 선정예정 신규기관 수>

연번	고용노동지청명	담당자 연락처	'19년 위탁기관수 (421개소)	'20년 선정예정 위탁기관수 (400개소)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004-7029	14	13
2	서울강남지청	02-3468-4818	7	6
3	서울동부지청	02-2142-8992	9	9
4	서울서부지청	02-2077-3478	10	9
5	서울남부지청	02-2639-2477	11	11
6	서울북부지청	02-2171-1745	15	14
7	서울관악지청	02-3282-9288	9	9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916	10	10
9	인천북부지청	032-540-5870	12	12
10	부천시청	032-320-8915	11	11
11	의정부지청	031-828-0996	12	12
12	고양지청	031-920-3948	11	11
13	경기지청	031-231-7963	17	17
14	성남지청	031-739-3125	17	15
15	안양지청	031-463-3854	8	8
16	안산지청	031-412-6636	10	10
17	평택지청	031-646-1271	7	7
18	강원지청	033-250-1959	4	4
19	강릉지청	033-610-1943	2	2
20	원주지청	033-769-0918	6	4
21	태백지청	033-550-8657	1	1
22	영월출장소	033-371-6257	0	1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60-2004	14	14
24	부산동부지청	051-760-7119	10	10
25	부산북부지청	051-330-9887	10	10
26	창원지청	055-239-5371	9	9
27	울산지청	052-228-3962	8	8
28	양산지청	055-330-9505	10	9
29	진주지청	055-760-6704	6	5
30	통영지청	055-650-1836	5	5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152	19	18
32	대구서부지청	053-605-6437	12	11
33	포항지청	054-280-3110	9	8
34	구미지청	054-440-3397	10	10
35	영주지청	054-639-1136	3	3
36	안동지청	054-851-8071	2	1
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609-8536	14	11
38	전주지청	063-270-9179	9	8
39	익산지청	063-840-6557	3	3
40	군산지청	063-450-0650	6	5
41	목포지청	061-280-0595	6	7
42	여수지청	061-720-9110	6	5
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3933	13	13
44	청주지청	043-230-7026	7	7
45	천안지청	041-620-9590	10	10
46	충주지청	043-850-4017	9	8
47	보령지청	041-930-6206	4	4
48	서산출장소	041-661-5616	2	2
49	제주특별자치도	별도공고	2	별도공고

* '20년 선정예정 기관 수는 선정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1. 사업수행기관 현황(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① 인력현황

- 총 종사자 수: 명(대표자·예정인원 포함,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총 상시근로자수 및 업무담당자수('19.12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구분	사업장 총 상시근로자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담당자수
인원수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담당자 채용 계획

② 조직현황

- 조직 예정인 경우 포함
※ 별도 조직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조직도 존재 시, 표 안에 표기

③ 물적 현황(시설 등)

- 총 면적 : () 평방미터 / () 평

○ 세부시설 현황

구 분	면 적 (평방미터)	구체적인 활용내역	비고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기 타			

* 상담실, 교육장 등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담실 1, 상담실 2의 형태로 표기

* ‘기타’에는 휴게실, 면접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사항 표기

건물 외관	건물 내부시설
사진 추가	사진 추가

건물 내부시설(상담실)	건물 내부시설(교육장)
사진 추가	사진 추가

* 추가할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

2.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및 유사사업 추진현황(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 * '19년도 취성패 위탁기관이 동일 지청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공모서류 제출시, 동 기관이 취성패 워크넷 기관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실적인정 가능('20년도 기존기관으로 평가 예정)
- ↳ 취성패 워크넷 기관코드는 동일 지청내에서 주소변경 등을 통해 승계가 가능하고, 이 경우 기존 위탁기관의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므로 실적인정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표기
- * 위탁기관 선정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실적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정량실적과 정성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행 실적

구 분	사업 수행 실적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예: 사업주 또는 동 기관에서 채용한 주요 업무담당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한 실적 • 정량실적은 참여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성과평가등급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 '19년 취성패 중장년층 자체모집 참여자·취업자 수는 1.5배 가점 • 정성실적은 사업운영의 질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② 유사사업 추진 실적(취업지원분야)

구 분	사업 수행 실적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K-move 스쿨, 고용디딤돌,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자치단체에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연계실적 • 정량실적은 참여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평가등급, 연계인원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 정성실적은 사업운영의 질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③ 공모사업 또는 유사사업 수행시 주요 지적사항

- * 작성대상: 정부(중앙·지방) 위탁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지도·점검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있는 경우 등

구 분	주요 지적사항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예: 워크넷 구직신청 임의삭제: 구직신청 100건 삭제, 관련자 3명 워크넷 아이디 회수조치 받음 • 예: 사망일자 이후 상담일지 부적정 등록 5명 확인되어 경고 조치 받음

④ **신설**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추진계획서 이행여부

구 분	'19년 주요계획	'19년 추진실적	이행 여부*
물적 현황	• 예: 상담공간 15평 마련	• 예: 상담공간 16평 마련	이행
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안	• 예: 설명회 5회 개최	• 예: 설명회 3회 개최	미이행 (이행률 60%)
단계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 예: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세부계획	• 세부계획 4개 이행 •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미운영	미이행 (핵심 계획 미이행)
취업지원 및 취업률 제고방안	• 예: 지역 사업장 MOU체결 등 4개 세부계획	• 세부계획 전체 이행	이행

* 이행여부의 경우 심사위원이 작성(위탁기관은 공란으로 제출)

** '19년 선정심사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를 함께 첨부

3. 기타

① 법인의 대표 및 임원현황(직업안정법 제 38조의 결격사유 확인용)

연번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본적
1					
2					
3					
4					
5					
6					
7					
8					
9					
10					

*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란을 추가하여 작성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자율) 첨부 필요

법인의 대표·임원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사업자가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
→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까지 결격사유 해당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동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취업성공패키지 기관과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인 직업훈련기관

연번	법인명	법인번호	훈련기관 사업자 번호	훈련 기관명	대표자 명	소재지	주요 훈련과정

③ '20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응모 현황

-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20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예: 대학일자리센터 등) 선정공모에 지원한 현황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련 사항(사업명, 발주기관, 사업내용) 적시

< 작성시 주의사항 >

◆ 2020년 민간위탁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기타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 되었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 2020년 연도 중 약정해지 될 수 있음

사 업 실 적 요약서

사업체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수행 실적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 실적	

사 업 추 진 계 획 서

1. 사업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3. 추진계획

가. 총괄

나. 세부 추진계획

<작성시 참고사항>

- 세부 추진계획은 아래 목차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20년 운영계획과 함께 그간 운영성과(최근 3년간) 실적도 함께 작성
 - 특히,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실적,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구인처 현황, 알선실적 등은 상세히 작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구인처 보유현황 평가시 활용<15점>)

☐ 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안

○

☐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 상담도구 활용,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등
-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 개선계획 등
- 유관기관 복지서비스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발굴방안

☐ 양질의 구인처 발굴 등 취업성과 제고방안

- 양질의 구인처 보유현황 및 발굴계획 등
- 대상자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등(필수작성)

□ 인적자원 투자계획(필수 작성)

○ '20년 임금지급계획

전체 업무담당자 인원수	전체 업무담당자 임금 총액	초임 업무담당자 임금(연봉)

- '20년 업무담당자 전체의 연봉 지급계획을 필수로 기재하고, 1년 미만의 업무담당자 연봉은 구분하여 별도 작성 필요
- 다만, 업무담당자 연봉이 없는 경우는 업무담당자 연봉으로 책정된 급여수준을 기재

* 연봉계약이 아닌 경우 연봉으로 환산하여 제출

→ 임금수준 평가 방식

- ① 고용노동지청 단위로, '20년 업무담당자의 연봉기준금액 기재(초임상담사 임금 50%, 해당기관 전체상담사 임금평균 50% 적용)
- ② 추후, 업무담당자별 월별 임금지급계획서는 약정체결 후 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업무담당자 통보시 함께 제출

○ '20년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계획

- 업무담당자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은 연 최대 80시간을 한도 함

업무담당자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중 외부교육시간*	업무담당자수

* 취성패 위탁기관이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나, 해당 위탁기관(동일 법인 또는 동일 사업주 포함)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수료증이 발부되는 교육으로 집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모두 가능

↳ 위탁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부담비율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인정하고, 무료 교육일 경우 근무시간 내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별도 교육수당 지급시에만 인정

- 구체적인 월별 교육계획 및 교육시간 작성 필요

→ 교육계획 평가방식: 고용노동지청 단위로, '20년 업무담당자의 교육계획 시간 기재(평균교육시간 50%, 총 교육시간 중 외부교육시간 비중 50%적용)

○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 계획

-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경력 및 자격에 따른 급여지급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 계획이 있으면 작성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명시)

○ '20년 업무담당자 상담경력

전체 업무담당자 인원수	전체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승인시 상담경력	전체 업무담당자 현재 기관 상담경력

□ 공모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시 지도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

- 구비서류 1-1(2.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사업추진현황
 [3] 공모사업 또는 유사사업 수행시 주요 지적사항)에서 적시한 처분
 (조치) 결과와 재발방지 계획 작성

4. 기타

○

※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양식을 재구성하여 제출 가능.

※ 다만, 한글을 이용하여 A4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당사는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임금 지급계획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약정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0. 1. .

서약자 : 대표 (인)

○○ 지청장 귀하

'20년 위탁사업 신청기관 현황표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민간위탁 사업 신청기관 현황표
--

연 번	사업수행기관	기관유형 (영리/비영리)	대 표 자	연 락 처
			담당자	
1				
2				
3				
4				
5				

【작성요령】

- 기관유형 :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자여부 표시
(예 : 유료직업소개, 무료직업소개)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참여 여부 등 특이사항은 표 하단에 기재

< 서식 3 >

현지실사 점검표

기 관 명			
대 표 자		담 당 자	
주 소			
위탁실시 희망지역			

구분	실사항목	실 사 결 과					비고
		매우 우수 (9-10)	우수 (7-8)	보통 (5-6)	미흡 (3-4)	아주 미흡 (1-2)	
1	• 접근편의성						
2	• 주변환경						
3	• 시설 구조 및 쾌적함						
4	• 기본 기자재 구비여부						
5	• 상담 공간 존재						
6	• 자체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가능성						
7	• 사업추진계획의 효과성						
8	• 사업의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총 평	
-----	--

점 검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 _____ (서 명)

< 서식 4 >

신청기관별 검토의견서

기 관 명	
-------	--

구 분	충족여부	검토의견
자격요건	충족 or 미충족 표시	
시설요건	충족 or 미충족 표시	
인적요건	충족 or 미충족 표시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부정수급, 경고 이상의 조치,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 등 기록	

【검토의견 작성요령】 접근편의성 및 체계적인 취업알선 가능성 등 신청요건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기술

< 서식 5 >

위탁기관 선정 심사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신청기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사업계획의 타당성 (총2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공모한 사업내용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 '19년도 사업추진계획을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이행 계획 1개당 1점 감점(최대 3점) (평가 방식: <구비서류 1-3> 사업추진계획서 참고)	1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 포함 여부 및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10점	
	소계 (20점)			
사업수행 능력 (총50점)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취업실적	최근 3년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유관 취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연계실적 * '19년도 취성패 중장년층 자체모집 실적은 1.5배 가점	20점	
	상담 시설 및 기타 관련 인프라의 적절성	상담 시설 등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시설 구비 여부, 외부시설 연계 등	15점	
	신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구인처 보유 현황	①복지 서비스, 일경험·직업훈련 등 내·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발굴·제공 능력 *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능력, 자치단체·타 위탁기관 등 외부기관 협업체계 등 ②지역 사업장 등 구인처 보유·관리현황	15점	
	소계 (50점)			
인적자원 투자계획 (총30점)	임금지급수준	'20년 업무담당자 임금 (초임상담사 임금 50% + 해당기관 전체 상담사 임금평균 50%)	10점	
	교육계획	'20년 계획된 교육시간 (평균교육시간 50% + 외부교육시간 비중 50%)	10점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계획	제출된 성과상여금 운영계획 등 기타 처우개선 계획으로 평가	5점	
	신설 업무담당자 상담경력	'20년 업무담당자의 평균 상담경력	5점	
	소계 (30점)			
합계			100점	

2020. . .

위원

(서명)

< 서식 6 >

신청기관별 심사결과표

◆ 신청기관명 :					
연 번	심 사 위 원 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 타 당 성	사업수행 능 력	인적자원 투자계획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 서식 7 >

선정심사 의결서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자를 별첨과
같이 선정 · 의결합니다.

2020 년 월 일

위 원 장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